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97
----------	-------

발의연월일 : 2023. 8. 31.

발 의 자 : 강득구 · 강민정 · 최혜영
김병욱 · 홍익표 · 김민석
송옥주 · 신정훈 · 양정숙
홍기원 · 최강욱 · 허종식
조오섭 · 이용빈 · 김의겸
김민철 · 윤준병 · 민병덕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4조제2항 및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경계선지능아동”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을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및 경계선지능아동”으로 한다.

제4장에 제4절(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경계선지능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44조의3(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

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의4(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아동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제3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u>경계선지능아동</u> ”이란 「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및 경계선지능아동</u>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절 경계선지능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44조의3(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의4(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

<신 설>

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아
동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
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경계선지능아동의 보
호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경계선지능아동의 보
호자가 경계선지능아동을 적절
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
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